

17. 학습경험 학점인정제(RPL)

학습경험 학점인정제도는 학칙 제38조(학습경험 학점인정)에 의거하여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선행학습인정제도(RPL; Recognition for Prior Experiential Learning) 운영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중복학습을 방지하고,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함

가. 운영 개요

- 1) 신청자격: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에 한함
- 2) 인정범위: 「학칙」 제21조에서 정한 졸업학점의 50%(최대 60학점)
- 3) 인정내용: 미래융합대학 해당학과 교육과정과 연관된 학습경험
- 4) 인정방법: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이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학과별 학점인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, 교과목별로 Pass 학점 부여
- 5) 신청기간 및 방법: 매 학기 초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 및 학과 공지

나. 학점인정 내용

- 1)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우
- 2)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
(다만, 국가기술자격, 국가전문자격,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한정함)
- 3) 그 밖에 총장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편입생의 경우, 편입학 전형 시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한 중복인정 불가
 -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른 인정 범위

다. 학점인정 기준 및 평가사항

- 1) 공통사항
 -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시 이미 인정받은 과목과 인정내용을 첨부해야 하며, 동일한 경력을 이중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
 - 각종 근무(활동)경력은 3년 이상으로 함. 다만, 근무(활동)경력은 첫 3년, 이후 5년 단위로 추가 중복인정 가능(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함)
 - 교육이수경력, 근무경력, 수상경력, 직무기술서, 특히, (민간)자격증(등록번호가 기입된 것만 인정) 등 객관적인 자료만 인정함

라. 관련 문의처 안내

- 미래융합대학 각 학과 사무실 (220-4643, 4644) 또는 성인학습지원센터(220-3245, 4646)